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납 증권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 완화〉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75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물납 증권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 완화 (안 제44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5.

다. 회 부 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

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Ⅲ. 검토의견

1. 물납 증권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 완화 (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 물납 증권 우선매수권 요건(시행령에 규정) ○ 물납 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익계약 가능.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처분해야 함(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 -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가목) -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나목)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물납 증권 우선매수권 요건(법률에 규정) ○ 물납 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익계약 가능. 이 경우 처분가격은 수납가액 및 예정가격 이상으로 처분해야 함(안 제44조의2 ③) - <삭 제> - 물납 증권 피상속인이 물납 증권 발행법인을 <u>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제1호)</u>

현행	개정안
-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다목) -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라목)	- 물납자가 물납 증권 발행법인의 <u>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일 것</u>(제2호) -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호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u>3년 이내</u>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제3호)

국세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국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 물납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물납제도는 1950년 「상속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법인세(1979년), 양도소득세(1995년), 종합부동산세(2005년)로 적용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물납제도에 대하여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회피 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물납적용 세목을 제한하였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가 순차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상속세에 관한 물납만 허용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¹⁾은 납세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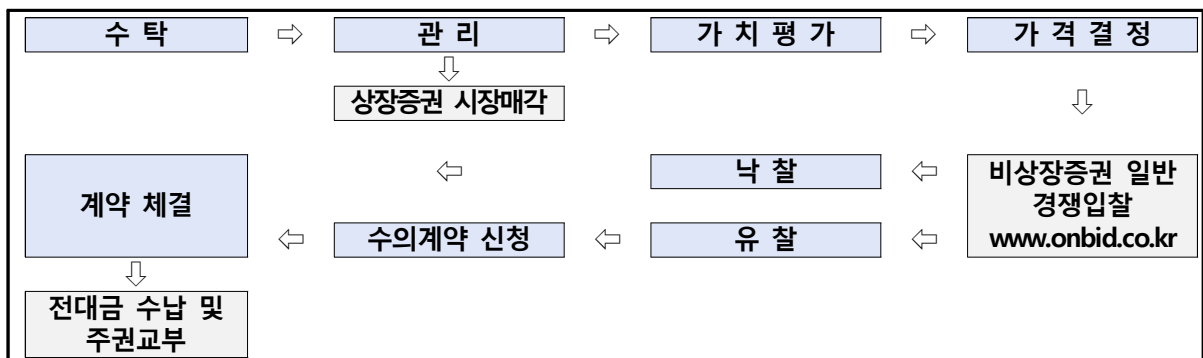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 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전 이외의 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된 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처분하고 있음.

[물납증권 관리체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흐름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은 ‘시행령’에서 물납 증권 우선매수권 요건으로 ①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대상기업 요건), ②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일정 기간²⁾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피상속인 요건), ③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상속인 요건), ④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을 요건(기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행령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① 대상기업 요건을 삭제하며, ② 피상속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③ 상속인 요건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며, ④ 기간 요건의 경우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임.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 2) 10년 이상의 기간
- 3)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최근 5년간 상속세를 증권으로 물납한 경우는 66건에 해당하나 물납증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는 2건에 불과하며,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기업을 승계하려는 상속인에게 물납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 비유동적인 정부 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촉진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5개년 물납증권 수납 내역]

(단위: 주, %)

일시	주식종류	상장여부	종목명	국가보유수량	국가지분율
2021-02-18	상속세	비상장	(주)스*****	2,212	0.07
2021-02-26	상속세	비상장	범**(주)	99,900	9.79
2021-03-12	상속세	비상장	세**(주)	20,655	5.23
2021-04-15	상속세	비상장	씨*(주)	9,999	50
2021-09-10	상속세	비상장	한***** (주)	355,533	4.47
2021-09-15	상속세	비상장	티***** (주)	1,755,403	18.38
2021-10-08	상속세	비상장	(주)미****	3,900	5.2
2021-10-13	상속세	비상장	(주)태*****	1,103	11.03
2021-11-17	상속세	비상장	(주)태*****	49	0.49
2021-11-30	상속세	비상장	(주)맥**	32,034	12.32
2022-01-10	상속세	비상장	(주)대*	54,042	27.02
2022-01-11	상속세	비상장	(주)기***	95,025	25.01
2022-02-09	상속세	비상장	(주)씨*****	172	2.65
2022-08-12	상속세	비상장	백*** (주)	4,416	1.3
2022-09-13	상속세	비상장	(주)제****	2,672	3.56
2022-11-11	상속세	비상장	(주)스*****	2,140	2.7
2022-11-11	상속세	비상장	현***** (주)	4,136	0.01
2022-11-11	상속세	비상장	(주)엘*****	38,498	0.06
2023-01-06	상속세	비상장	중***** (주)	30,946	8.8
2023-02-02	상속세	비상장	(주)엔***	852,190	29.3
2023-03-20	상속세	비상장	(주)아***	2,932	1.26
2023-03-23	상속세	비상장	한***** (주)	18,294	7.17
2023-06-16	상속세	비상장	(주)디*****	158,640	15.99
2023-07-12	상속세	비상장	고*** (주)	2,677	0.22
2023-07-19	상속세	비상장	(주)대*	1,327	4.42
2023-07-20	상속세	비상장	(주)크**	75,181	2.73

2023-08-14	상속세	비상장	(주)남*	25,740	15.69
2023-08-17	상속세	상장	(주)맥**	308,966	1.58
2023-08-29	상속세	비상장	(주)티***	2,616	3.03
2023-10-26	상속세	비상장	(주)케*****	7,089	7.09
2023-11-01	상속세	비상장	태*** (주)	1,083	2.17
2023-11-03	상속세	비상장	말*** (주)	5,523	9.21
2024-01-10	상속세	비상장	(주)세*	71,750	24.73
2024-01-19	상속세	비상장	(주)매***	33,910	21.2
2024-01-23	상속세	비상장	(주)원*	9,676	6.71
2024-02-21	상속세	비상장	(주)카**	7,780	10.51
2024-02-21	상속세	비상장	마***** (주)	23,718	2.37
2024-02-22	상속세	비상장	(주)드*****	545,260	19.47
2024-02-22	상속세	비상장	남*** (주)	4,499	5
2024-02-22	상속세	비상장	(주)대*	4,999	25
2024-03-25	상속세	비상장	(주)흥*	47,178	2.74
2024-03-28	상속세	비상장	제*** (주)	30,023	5.37
2024-03-28	상속세	비상장	해*** (주)	244,200	33
2024-04-02	상속세	비상장	대***** (주)	52,457	9.44
2024-04-08	상속세	비상장	기***** (주)	719	10.58
2024-05-23	상속세	비상장	(주)진***	15,235	6.9
2024-06-18	상속세	비상장	해*** (주)	13,642	6.82
2024-06-18	상속세	비상장	(주)슈***	442	0.63
2024-07-10	상속세	비상장	(주)남*****	2,443	2.03
2024-07-25	상속세	비상장	기***** (주)	719	10.58
2024-08-07	상속세	비상장	(주)인*	179,613	32.36
2024-08-29	상속세	비상장	홍*** (주)	3,672	5.25
2024-09-19	상속세	비상장	(주)남*****	2,443	2.03
2024-09-23	상속세	비상장	(주)맥*	9,512	3.05
2024-10-02	상속세	비상장	(주)슈***	442	0.63
2024-11-05	상속세	비상장	(주)대*	58,030	6.54
2024-12-03	상속세	비상장	(주)스*****	17,839	1.98
2024-12-09	상속세	비상장	(주)서*****	4,654	15.51
2025-01-13	상속세	비상장	(주)삼*	39,126	1.15
2025-03-06	상속세	비상장	(주)삼*	476	0.01
2025-04-10	상속세	비상장	(주)디***	3,806	9.52
2025-05-28	상속세	비상장	(주)금*****	171,131	19.2
2025-06-09	상속세	비상장	(주)동*****	61,754	11.27
2025-08-12	상속세	비상장	(주)디***	5,671	14.17
2025-09-01	상속세	비상장	이***** (주)	20,824	3.98
2025-09-02	상속세	비상장	(주)다**	3,000	11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물납증권 우선매수권에 따른 매각 내역]

(단위: 주, %)

일시	주식종류	상장여부	종목명	국가보유수량	국가지분율
2024-01-18	상속세	비상장	(주)매***	678,200	21.2
2024-10-15	상속세	비상장	(주)서*****	4,654	15.51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2024.8.14.)에서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기획재정부는 ①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은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② 대상기업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우선매수 제도 개선(안)]

		기존 요건	개선(안)
신청요건	기업	중기+중견(매출액 3천억원 ↓)	중소 + 중견기업
	신청인	대표이사 and 최대주주	대표이사 or 최대주주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and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10년 이상 계속 경영 or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매각가격		평가액	평가액 대비 20~50% 감액 (단, 물납가 이상)
매수예약 신청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매수 신청		물납허가일로부터 5년	좌 동

자료: 240814 (보도자료)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개최

①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행사는 사실상 상속세 제도의 보완책으로 상속인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편, ②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대기업을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물납증권 우선매수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다만, 동 제도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원칙인 경쟁입찰³⁾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u>증권</u> 의 경우 물납한 <u>본인</u>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등) ① ----- ----- <u>증권(이하 이 조에서 “물납 증권”이라 한다)</u> ----- <u>본인(이하 이 조에서 “물납자”라 한다)</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물납 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며,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u>
	1. <u>물납 증권 피상속인이 물납 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u>
	2. <u>물납자가 물납 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일 것</u>
	3. <u>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호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0